

建設交通 常任委員會 會議結果報告

■ 제203회 임시회 제 2차 건설교통위원회

□ 일 시 : 2012. 9. 5(수) 10:00 ~ 17:00

□ 안 건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4. 2012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참석의원 : 6名(이도형, 이재병, 김병철, 전용철, 전원기, 이재호 의원)

※ 참석자 : 건설교통국장 외 30명

□ 부의안건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질의 및 답변

- 집행부의 비용추계와 조례안에서의 비용추계가 차이가 있는데 사유는?(전 용철 의원)
⇒ 집행부가 산정한 금액은 통행료 추이를 보고 같은 비율로 늘어날 것으로 산출한 것이고, 안건의 비용은 조례에서 명시한 근거로 산출한 것이므로 차이가 있음(건설교통국장)
- 통행료 지원은 복지가 아니고 생활권 및 생존권과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형평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 (이 재호 의원)
⇒ 공항철도가 개통 되기 전에 원주민 통행료에 문제가 있어 국토부에서 지원 하였으며 2007년 공항철도가 개통돼 지원이 중단되었고 2009년까지 시비로 지원 하였으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하늘도시입주시기를 감안해 2013년 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고 대중교통체계가 확충되므로 당초 조례대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건설교통국장)
- 영종도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 지리적으로 멀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임.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지?(전 원기 의원)
⇒ 영종도에는 무료다리가 없고, 행정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며, 정말 어려워서 요구하는 것 임.(김 정현 의원)
- 헌법에서 이동권과 통행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과 제3연륙교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김 병철 의원)
⇒ 대중교통체계가 많이 이루어 졌고 획기적인 대중교통 방안을 금년 내에 만들어서 발표할 계획임.(건설교통국장)
- 국가, 시, 구에 모두 책임이 있음 이것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재병 의원)
⇒ 국토해양부에 철도 환승을 요구하였고, 제3연륙교도 조속한 허가를 요청 하였으며 국회에도 요구를 하였음(건설교통국장)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질의 및 답변

- 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외곽지역에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견은?(전 원기 의원)

⇒ 화물차 통행이 제한되는 지역 외에 외곽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대형차량의 주차구역을 검토하겠음(건설교통국장)

- 장애인 주차구역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이 재병 의원)

⇒ 장애인 주차장은 법적 사항으로 통합관리는 역기능이 있음(건설교통국장)

- 보통세에 목적재원을 제외한 이유는 금액이 크기 때문인지?(전 용철 의원)

⇒ 그렇습니다.(건설교통국장)

3.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 원안가결

○ 질의 및 답변

- 관리비가 발생하므로 받지 않을 생각은?(전 원기 의원)

⇒ 공공시설인 지하철 시설물이므로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건설교통국장)

- 연결통로에 대한 공사는 누가 했는지? (전 용철 의원)

⇒ 포스코에서 건설했음.(건설교통국장)

4. 2012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교통카드 50% 지원이 무엇인지?(전 원기 의원)

⇒ 카드수수료 2.4%의 1.2%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임(건설교통국장)

- 거주자 우선주차 미 추진구가 3개 있는데 사유는?(전 용철 의원)

⇒ 민원과 예산 관계로 미 추진함.(건설교통국장)

- 버스증차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이 재병 의원)

⇒ 배차간격이 20분이 넘으면 증차하고 있음.(건설교통국장)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비고
2012. 9. 6(목)	3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서운일반산업단지)변경 결정안 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현동627-528번지일원)변경 결정안 5. 2012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

보고자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